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축물석면조사 실시사유 확대 및 학교등 부속토지 관리 강화 등 〉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19호)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62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건축물석면조사 실시사유 확대 및 학교등 부속토지 관리 강화	3
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10
※ 참고자료	18
1. 석면건축물 관리 절차	18
2. 관련 조문	19

I. 제안경위

연번	의안번호	법률명	발의일	회부일	대표발의
1	221951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2026.07.01	서왕진의원
2	2219562		2026.06.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9519호)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초 조사 이후 건축물의 해체·제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노후화된 경우에 대비하는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함.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등 취약시설의 부속토지 및 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출입 통제나 오염토양 정화 등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제거 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보수·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2조 등).

2.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9562호)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규모나 석면자재의 손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안전관리 인력 지정 기준을 두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이나 취약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안전용품의 구비 의무가 부재하고,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야외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안전 용품 구비를 의무화하며, 안전관리인은 구비된 안전용품의 정기적 확인 및 석면 비산 우려가 발생시 즉각적인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화 함.

또한 학교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초기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석면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0조 및 제49조).

Ⅲ. 검토의견

1. 건축물석면조사 실시사유 확대 및 학교등 부속토지 관리 강화

개정안(의안번호 제2219519호)은 건축물석면조사의 재조사 사유를 확대하고, 석면건축자재 보수·보강 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록 의무를 신설하며,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된 경우 조사 및 후속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 및 제49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 ----- ----- ----- ----- ----- ----- ----- ----- -----

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해당 건축물에 변경사항이 있는 날

5.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

② 건축물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비산방지 조치를 완료한 후 해당 구역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는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슬레이트 조각 등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물질이

②·③ (생략)

④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 ⑦ (생략)

<신설>

⑧ (생략)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발견된 지점과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⑤(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 ----- 기록, 변경 및 보존 -----
-----.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석면 함유 파편·잔재물이 확인된 경우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구역의 출입통제, 석면 함유 물질의 수거·처리, 오염토양의 제거 또는 복구, 비산방지 조치, 재발방지 조치 및 그 결과의 기록·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49조(과태료) ① -----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2. 3.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 9 (생략) ④ ~ ⑥ (생략)	-----. 1. 제21조제1항 및 제3항----- -----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5항----- ----- ----- 3. ~ 9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사용승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현행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3. (생략)

② ③ (생략)

④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최초 조사 이후 건축물의 변경·보수 또는 장기간 경과에 따른 별도의 재조사 의무와 학교 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이 발견된 경우의 조사·처리 절차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으로 건축물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건축물석면조사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석면건축자재의 보수·보강 후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하며, 학교 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파편·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조사 및 후속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석면건축물의 사후관리와 취약계층의 석면 노출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재조사 의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기록하며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수·밀봉·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²⁾.

2) **현행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제35조에 따른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현행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

따라서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으로 일부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건축물석면조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기존의 관리·점검체계의 관계에서 기능적으로 중복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특히 건축물의 구조나 석면건축자재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재조사의 필요성 및 비용 대비 효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21조제2항은 석면건축자재를 보수·보강한 경우 그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구역의 사용 재개 전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³⁾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 이하가

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현행법 시행규칙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③ 이하 생략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체·제거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측정의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도배·도장·밀봉 등 보수·보강 작업 모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수·보강 작업의 종류와 비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셋째, 안 제21조제3항은 학교 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된 경우 곧바로 출입을 제한하고 석면조사기관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단순 신고만으로 전문조사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나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 교육부는 석면건축물 재조사 사유 확대에 대하여 기존 석면건축물 관리체계와 중복될 소지가 있고, 보수·보강 시 석면농도 측정 의무화에 대해서는 행정 및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경상남도는 같은 취지에서 ‘석면함유 의심 파편·잔재물’ 등의 판단기준과 조사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함.⁴⁾

4) 추가로, 김포시는 10년 경과에 따른 재조사와 보수·보강 규모와 관계없는 농도측정 의무가 행정력과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개정안(의안번호 제2219562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복수 지정, 안전관리용품·용구의 구비 및 점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비산 우려 발생 시 현장조치, 학교 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함유 의심 파편·잔재물 발견 시 보고 및 초기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기준에 사업장 면적·층수·투입 인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0조 및 제49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생략) <u><신설></u>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석면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1. 석면건축물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신 설>

<신 설>

<신 설>

인 경우

2.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석면건축물의 건축물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비산 우려 또는 긴급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비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호구, 출입통제 용품, 비산방지 용품, 점검·기록 용구 등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용구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3항에 따른 용품·용구의 비치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또는 비산 우려가 발생한 경우 출입통제, 현장기록, 비산방지 조치 등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

②·③ (생략)

법률 제21369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
리인 지정 등) ① ~ ⑤ (생
략)

⑥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
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다.

제49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에서 슬레이트 조각 등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
이 확인되거나 신고된 경우에
는 지체없이 학교등의 건축물
을 관리하는 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구역의 출입통제 등 초기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⑦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법률 제21369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
리인 지정 등) ① ~ ⑤ (현행
과 같음)

⑥ -----

- 사업장 면적, 층수, 투입 인
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

제4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 ----- -----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6항-----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3조⁵⁾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⁶⁾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5) **현행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6) **현행법 시행규칙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그러나 현행법상의 석면건축물 관리가 석면기자재의 손상이나 비산 등에 대해서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와 현행 1명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고위험 석면건축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용품·용구의 구비 및 점검, 석면건축자재 손상·비산 우려 발생 시 출입통제·현장기록·비산방지 등 초기 대응의무를 추가함으로써 현행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화·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석면조사기관(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을 대행한 자는 제외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

현행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현행법 시행규칙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③ 이하 생략

이를 통해 대규모 석면건축물이나 학교 등 다수 또는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안전관리인력과 현장 대응수단을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23조제2항제2호는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자신의 의무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안 제23조제5항은 학교 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이 발견되거나 신고된 경우 안전관리인에게 보고 및 초기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옥외에서 발견된 파편·잔재물이 해당 석면건축물에서 발생한 것인지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반입된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관리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안전관리용품·용구의 구비·관리, 석면건축자재 손상 시 안전조치, 학교 등의 옥외 석면 의심 잔재물에 대한 보고·초기조치 등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고 있으나,

현행법 시행령⁷⁾과 시행규칙⁸⁾에서도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와 비산 가능성을 6개월마다 조사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라 보수·밀봉·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안전관리 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체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

한편, 개정안 중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직원 간 업무갈등과 업무 부담이 초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경상남도는 민간시설 및 인력부족 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7) **현행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현행법 시행규칙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③ 이하 생략

문 의 처
02)6788-5542

참고자료 1

석면건축물 관리 절차

A. 건축물석면조사→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 관리(석면안전관리법)

01 건축물석면조사	02 석면지도 작성	03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주체) 건축물소유자→ 석면조사기관 (시기) 사용승인 인·허가등 기준일부터 1년 이내 (대상) 연면적 500㎡이상 공공기관, 영유아시설(전체), 불특정다수인 이용시설(규모별) (현황) 석면조사건수 (85,667) (보고) 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 제출 (1개월 이내)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	(주체) 건축물소유자→ 석면조사기관 (시기) 석면조사결과 제출시 (대상) ▲ 석면건축물소재 면적의 합이 50㎡이상, ▲ 지붕재·천장재 등(무게로 1% 초과) (현황) 석면건축물 개소수 (14,746) (보고) 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석면지도 제출(1개월 이내)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	03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1) 석면안전관리인 지정·교육 - (지정) 소유자또는 점유자(관다), 1인 이상 - (교육) 신규(3개월 이내, 집합)/ 보수교육(2년 마다, 영상) 2) 위해성평가 및 조치 - (주체) 석면안전관리인 - (시기) 6개월마다 실시 - (내용) 손상정도 및 비산가능성 등 - (조치) 등급별 해체제거, 폐쇄, 밀봉 등 3)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조치 - (주체) 건축물소유자→전문기관(고시로 지정) - (시기) 2년마다 실시 - (조치) 기준초과 시 조치 후 반복 측정으로 기준미만시 관리대상에 기록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

B. 석면건축물 제외 및 해체·제거(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01 석면건축물 제외	02 석면해체·제거 신고	03 석면해체·제거 작업
(주체) 건축물소유자 (시기)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대상) 용도변경·폐업, 철거 등 (보고) 석면건축물 제외승인신청 - 석면조사결과, 석면지도 및 증거자료 등 제출→제외승인(지자체)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	(주체) 해체·제거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시기) 공사착공 7일 전 (신고)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 공사계획서 사본 등 제출→ 신고증명서 발급 ※ (고용노동부) 노사노리시스템 입력→ 기후부(석면관리종합정보망) 연계	(주체) 해체·제거업자 (관리) ①사업장 내 및 ②주변 석면농도 측정 * ① 산업안전보건법, ② 석면안전관리법 (감리인 지정·업무) ▲ 작업현장 상주 및 석면농도 기준 준수 등 관리감독, ▲ 감리인 평가 및 결과공개 ※ (지자체 감리인 신고) 새올 행정시스템 입력→ 기후부(석면관리종합정보망) 연계

□ 석면건축물 관리절차에 따른 소요예산(지역아동센터 예시)

1. 적용단가

구분	석면조사	석면농도 측정(비산)	시료 분석
단가	약 2천원/㎡	약 2천원/㎡	시료 수 × 40,000원

※ 상기 단가는 석면조사기관 견적 등을 참고한 단가로 석면조사업체 별로 기준단가는 상이함

2. 예상비용 예시

구분	면적(㎡)	석면조사 단가	석면농도 측정단가	시료 분석비	총 예상비용(원)
지역아동센터	150	300,000원	300,000원	시료 수 × 40,000원	600,000+시료분석비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제35조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제출방법, 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2의2. 석면건축물의 용도변경, 폐업 등 증명자료(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시까지 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해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생략)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준수사항 등)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석면조사기관(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을 대행한 자는 제외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 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포함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③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해체·제거)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124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제181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122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는 영 제94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공사계약서 사본
2.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한다)
3. 석면조사결과서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신고한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대상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